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8년도 리트

사유재산 제도에서 개인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생전의 제한 없는 재산 처분은 유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몫이 상속인에게 유보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유류분(遺留分) 제도이다.

프랑스는 대혁명을 거치면서도 예전처럼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크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관념이었다. 그러나 가부장의 전횡을 불러오는 이런 자유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혁명기의 입법자는 유언의 자유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입법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처분이 가능한 자유분과 상속인들을 위해 유보해야 하는 유류분으로 구분하여 자유분을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1804년의 나폴레옹 민법전에서는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에 한해 유류분권을 인정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자격과 수에 따라 달라지게 했다.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 또는 유언에 의한 무상처분은 자녀를 한 명 남긴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을, 두 명을 남기는 경우에는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유류분권자에서 배제되지만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도록 하여, 상속 포기가 있어도 자유분에는 변동이 없었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직계비속을 위한 유류분 제도는 젊은 상속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

2006년에는 큰 변경이 있었다.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이 고령화로 인해 장기에 걸쳐 진행되므로, 유류분 부족분을 상속 재산 자체로 반환하는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영향 받는 제삼자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 상속 개시 시기가 늦어졌어도 상속인들이 생활 기반을 갖춘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또 이혼이나 재혼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를 배경으로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허용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폐지했다.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도 증대시켰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 상속 포기가 있으면 자유분이 증가하도록 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제삼자를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만큼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우리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신설되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 결격 사유도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를 유류분권자의 범주에 포함하되 최우선 순위인 상속권자를 유류분권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1순위, 직계존속은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는 동일 순위이지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상속인으로 인정한다. 유류분권자가 된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 비율로 정한다. 법정 상속분은 직계비속들 사이에서는 균분이고,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반이다. 구체적 유류분액을 확정하

여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 한도에서 유증(遺贈) 또는 증여 받은 자에게 부족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최근 **우리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호주 상속인만의 재산 상속 풍조가 만연한 탓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법 적용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권을 보장하는 점이 중시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장자 단독 상속 현상이 드물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제한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3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프랑스 혁명기 입법자의 유언의 자유에 대한 태도는 자유분의 최소화로 나타났다.
- ②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은 젊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무라는 점을 들어 생전 재산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했다.
- ③ '2006년 프랑스 민법전'은 고령화 및 이혼·재혼 가정의 증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강화했다.
- ④ 우리 민법에 따르면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우리의 유류분 제도 입법 취지는 호주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여 배우자 등 상속인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34. 윗글에 제시된 각 입장에 따라 **우리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정 방향을 논의할 때, 추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랑스 혁명기의 사회 관념에 따를 경우, 유류분권자의 권익은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 ②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의 입장에 따를 경우, 배우자가 지니는 유류분권자로서의 권익은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 ③ '2006년 프랑스 민법전'의 입장에 따를 경우, 직계존속이 지니는 유류분권자로서의 권익은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 ④ '2006년 프랑스 민법전'의 입장에 따를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으로 증여받은 제삼자의 권익은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 ⑤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이해관계를 형성했던 제삼자가 고려해야 하는 유류분권자의 권익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33	④
34	④
35	①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평가할 때,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보 기>—

A가 사망했고 장남 B, 차남 C, A의 동생 D가 남아 있다. B는 사업에 실패하여 극심한 생활 곤란을 겪고 있고, C는 경제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D는 고령으로 인해 생활 위기에 직면해 있다.

- ㄱ.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B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B는 유류분 계산시 A의 자녀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ㄴ.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D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ㄷ. '2006년 프랑스 민법전'에 의하면,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유분에는 변동이 없다.
- ㄹ. 우리 현행 민법에 의하면, B와 C가 모두 유류분권자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유류분 비율은 동일하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3년도 9월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 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3}{7}$ 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1}{3}$ 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10	⑤
11	②
12	④
13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6 수특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 비율을 일컫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나누어진다.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형제 자매처럼 같은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우,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일정액의 기여분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단순 승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모두 승계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된다. 원래 빚을 갚아야 할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에 민법에서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먼저 갚은 후에 나머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상속 포기’는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의 상속 포기 신고가 승인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앞 순위의 단독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된 상속분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으로 정해지며,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 자격을 가지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피상속인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상속 포기 약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럴 수는 없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 포기 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만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앞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같은 상속 순위 내에서도 상속 포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의 빚이 많음을 알지 못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면 된다.

*직계 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룸.

*직계 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룸.

*방계 혈족: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을 이룸.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배당 비율을 유언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 ② 상속의 순위가 앞인 사람보다 상속의 순위가 뒤인 사람이 먼저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포기된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④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빚이 적을 것이 확실할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의 취지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② 상속분에 대한 공동 상속인들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③ 법에 따른 상속분 배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④ 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⑤ 상속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윗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준우와 현우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의 아버지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1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고, 이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4주 후, 두 형제는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야 할 2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

- ①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은 직후에 상속 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아버지의 재산과 빚이 승계될 수 있겠군.
- ②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기 직전에 한정 승인을 했다면, 두 형제는 합쳐서 1억 원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겠군.
- ③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은 후에도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두 형제는 합쳐서 1억 원의 손해를 보겠군.
- ④ 두 형제가 상속 포기 약정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했다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과 빚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겠군.
- ⑤ 두 형제가 상속을 단순 승인한 후에 우편물을 읽고 빚에 대해 알았다면, 빚이 있음을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겠군.

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한국인 씨' 가족들에게 상속될 금액을 각각 바르게 나타낸 것은?

— < 보 기 > —

한국인 씨는 암에 걸린 아버지를 지극히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숨을 거두었으며, 상속에 관한 유언은 없었다. 아버지는 빚이 없이 8천만 원의 재산만 남겼고, 남은 가족은 한국인 씨와 한국인 씨의 어머니, 한국인 씨의 오빠이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되, 그동안 한국인 씨가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병해 준 것을 고맙게 여겨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1천만 원의 기여분을 한국인 씨에게 주기로 협의했다.

	한국인 씨	어머니	오빠
①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②	3천만 원	2천5백만 원	2천5백만 원
③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④	4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⑤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